

#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필리핀
2. 훈련기관명 : University of Cebu School of Law
3. 훈련분야 : 형사정책(경찰행정)
4. 훈련기간 : 2019. 11. 1. ~ 2020. 4. 8.

## 훈련기관 소개서

명 칭	UC 로스쿨 (University of Cebu School of law)	훈련기관 성 격	대 학 교 (법학 관련)						
소재지 (홈페이지)	Banilad, Cebu City, Philippines <a href="http://www.universityofcebu.net/">http://www.universityofcebu.net/</a> <a href="http://banilad.uc.edu.ph/school-of-law">http://banilad.uc.edu.ph/school-of-law</a> <a href="http://www.cordova.gov.ph/">http://www.cordova.gov.ph/</a>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versity of Cebu 는 1964년에 설립되어 4개의 캠퍼스(Sanciangko Main Campus, Banilad Campus, Mambaling Campus, Lapu-lapu Campus)를 두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사립대학 임.</li> <li>• 2019년 현재, 61,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운영하는 세부시티의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임</li> <li>• 2002년 로스쿨을 개설한 이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 많은 법률가 및 행정가를 양성</li> <li>• 로스쿨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훌륭한 커리큘럼, 교수진을 비롯하여 장학혜택임.</li> <li>• 2006년 첫 필리핀 변호사 시험에서 80%의 합격률을 기록하였으며, 현재 까지 필리핀내 로스쿨 10위권내로 인정</li> <li>• 또한, 범죄학을 비롯하여 형사정책, 공공행정 등에 있어서도 활발한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li> </ul>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본부, 각 단과대, 도서관 등</li> <li>• 26명의 로스쿨 교수, J.D. Thesis Program 등 3개 운영</li> </ul>								
주요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Shwaid de Leon Ismael, - Dean, J.D., LL.M., 필리핀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li> <li>• ANNIE TAN - Assitnat to the Dean, J.D, 필리핀 변호사</li> </ul>								
교섭창구	Al-Shwaid de Leon Ismael, J.D., LL.M. Dean, School of lawCriminology <hr/>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전화:</td> <td style="width: 33%;">FAX:</td> <td style="width: 33%;">E-mail:</td> </tr> <tr> <td>(+63) 32 233 8888</td> <td>(+63) 32 505 4978</td> <td>schooloflaw@uc.edu.ph</td> </tr> </table>			전화:	FAX:	E-mail:	(+63) 32 233 8888	(+63) 32 505 4978	schooloflaw@uc.edu.ph
전화:	FAX:	E-mail:							
(+63) 32 233 8888	(+63) 32 505 4978	schooloflaw@uc.edu.ph							

## 결과보고서 요약서

훈련자	조용석	직급	경정
소속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		
훈련국	필리핀	훈련기간	2019.11.1. ~ 2020.4.8
훈련기관	세부 대학 로스쿨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매수	112 매
내용요약	<p>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해외 출국자 숫자는 2,600여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제화 추세이다. 범죄에 있어서도 매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국외도피 사범이 1천여 명에 달하는 등 국제화 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송환은 매우 저조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p> <p>따라서 국외도피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수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우발적 범죄보다는 사기·횡령과 같은 계획 범죄자들에 의한 국외 도피가 많아 국민의 피해가 상당하다. 이로 인하여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신속한 국내 송환 및 처벌이 필요하다.</p> <p>본 연구는 국내 범죄자들이 주로 도피하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실태를 조사하고, 신속한 송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수사에 있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		

**내용요약**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적 방안 강구를 위하여 다음의 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국외도피사범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주로 어느 나라로 도피하며, 도피범 가운데 얼마나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둘째,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형태는 무엇이며, 이론상·실무상 어떤 형태로 송환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실무상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이용하는 송환절차의 법적 문제는 없는지도 검토하였다.

셋째, 국제공조수사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현재 필리핀 지역에 운영중인 코리안데스크의 실태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우선 국외도피사범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외교부의 ‘사건·사고 발생현황’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외교부에서 국가별로 사건·사고 현황을 안내해주는 ‘해외안전 여행’내 ‘필리핀 개황’등을 통해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 관련하여 한국 언론의 보도 자료 및 각종 학술 논문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밖에 국제규범, 필리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법령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외도피사범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현직 사건·사고 담당 영사,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영사협력원, 필리핀 세부 지역 한인 교민회, 필리핀 경찰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내용요약**

필리핀에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의 형사절차는 우리나라처럼 투명하거나 공정하지도 않다는 점에 착안해야한다는 것이다. 굳이 경우에 따라서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이나 국제공조수사의 일련의 과정을 외교절차나 국제법 및 필리핀 형사 절차의 준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필리핀에서는 ‘법대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서 사건·사고 담당 영사 및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융통성’있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피로감 호소 등을 이유로 자수 의사를 밝힌 피의자 있다고 가정하자. 이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 도중에 필리핀 현지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상태(pending)라고 하면 이 피의자는 필리핀에서 모든 재판 절차를 마칠 때까지 출국을 할 수 없다. 필리핀 재판 절차는 지연되기 십상이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럴 경우 피의자의 국내송환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법의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인 자국민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영사 등의 조력을 받아 pending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때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의 범죄 실태 등 관련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각종 통계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외교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e-Consul(영사민원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외도피사범의 증가, 재외국민들의 영사 조력 수요 증가에 불구하고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수는 수년째 제자리이다. 특히 해외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영사의 경우는 기껏해야 31개국(48개 공관)에 55명에 불과하여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다. 따라서 경찰 영사 업무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 주재관의 파견국 확대 및 파견 경찰관의 숫자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요약**

넷째, 외교관 신분의 경찰 영사 외에도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같은 형태의 한국 경찰의 해외 파견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외국민들은 외교관에 대한 불신과 대사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실망을 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외교관(영사)과 재외국민간의 거리감은 상존한다. 그러나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한국 경찰 신분으로 필리핀 경찰청 내에 상주하고 있다. 이런 만큼 재외국민들은 영사보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보다 친근하고 각종 상담 등 조력이 용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 차원에서 한국인 범죄 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의 선발시 그 역할이 주재국의 수사기관 등과의 원활한 협조 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선발 자격을 수사·외사 분야 경력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보 분야 경력자 등도 선발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치안교류를 위하여 해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원 형태에 있어서 다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본바 있다. 순찰차, 오토바이 등 차량 지원은 필리핀의 치안 여건을 감안하여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학수사키트와 지원에 있어서는 필리핀의 치안 수준 상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삼단봉 등 기본 장구 지원, 112 시스템 전수, 범죄 예방 관련 직무 교육 등이 필리핀 치안 여건에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듯 해외지원 사업 방식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 및 국제공조수사의 실효적 방안을 조금이나마 도출해보았다. 다만, 본 연구는 필리핀의 현실을 기초로 진행하였던 만큼 다른 국가에 적용함에 있어서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내용요약

국제공조수사 등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개별적인 교류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Give and Take’의 방식으로 그 사업 내용 또한 해당 국가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실효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